

콘텐츠 산업 경쟁력 및 저작권 인식 강화를 위한
한국콘텐츠진흥원-한국저작권위원회
업무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‘진흥원’이라 한다.)과 한국저작권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 및 저작권 인식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콘텐츠 산업 경쟁력 및 저작권 인식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분야)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및 콘텐츠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
2. 저작권 교육 관련 상호협력
3. 콘텐츠 및 저작권 기술 관련 상호협력
4. 보유 콘텐츠의 상호연계 서비스 협력
5. 1인창조기업 등 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위한 상호협력
6. 분쟁조정 관련 상호협력
7. 저작권 인식제고 및 사업홍보를 위한 상호협력

제3조 (협약이행) 이 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견과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며, 세부적인 사항은 양 기관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한다.

제4조 (협약의 효력)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의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,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여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.

제5조 (협약의 해석) 이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,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.

제6조 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 기관의 비공개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.

제7조 (기타사항) 본 협약의 목적 및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하되,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9월 27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

원장 홍상표

홍상표



한국저작권위원회
KOREA COPYRIGHT COMMISSION

위원장 유병한

유병한